「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특약

제1조 (적용범위)

『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 다.

제2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계정과목은 외화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자격)

이 예금의 가입자격은 개인에 한하며, 스마트폰뱅킹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합니다.

제5조 (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폴달러화, 덴마크크로네화, 노르웨이크로네화, 스웨덴크로나화, 쿠웨이트디나르화 및 중국위안화로 총 15개 통화입니다.

제6조 (납입한도 및 적립방법)

이 예금은 납입금액, 적립횟수 및 적립일자에 대한 제한 없이 만기일 전날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적용이율)

- ① 이 예금의 이율은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은 납입금별로 연 0.10%p의 스마트폰전용계좌 우대이율을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예치기간이 1개월 미만인 납입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가입기간 중 본인명의로 다음의 외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외환거래 종류별 우대이율을 합산하여 최대 연 0.20%p의 이율을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예금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1. 영업점창구에서 USD500 상당액 이상 송금한 경우 연 0.05%p
 - 2. 영업점창구에서 USD200 상당액 이상 환전한 경우 연 0.05%p
 - 3.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으로 USD500 상당액 이상 송금한 경우 연 0.10%p
 - 4.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으로 USD200 상당액 이상 환전한 경우 연 0.10%p

제8조 (분할인출)

① 예금주는 만기일 전 5회까지 이 예금을 분할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합니다.

- ② 이 예금은 선입선출 방법을 통해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 ③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인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제9조 (중도해지)

제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중도해지하는 납입금의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유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 (만기후 이자)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납입금별로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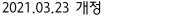
제11조 (갱신)

- ① 이 예금은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가입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만기일(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에 전과 동일한 기간 또는 예금주가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자동갱신 처리합니다.
- ② 갱신된 예금의 이자는 갱신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6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약관-317호(2021.03.23)

